

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[별표 6] <신설 2025. 10. 1.>

투자성 상품 관련 (부)적정성 판단 보고서(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호 서류)

※ 회사별 기존 서류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 가능

고객명:	고객번호:
------	-------

■ 고객정보 확인결과

고객 정보	
거래 목적 :	
고객 연령 :	
투자 기간 :	
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:	
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:	
보유자산 등 :	
위험에 대한 태도 :	
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:	

■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

총 합	☐ 적정 ☐ 부적정
이 유 [부적정인 경우 상세히 서술]	[회사별 기재]

■ 참고 사항

○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,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.

○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■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.

일자 : 고객의 성명 : 서명/인

※ 적정/부적정 판단 상세 이유			
※(예시) ① () 개 항목 충족/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() 점 이상/ 총점 () 점 이하 적정/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(아래 표 참조)			
고객 정보	적정/부적정 판단 결과		미충족 사유
거래 목적 :			
고객 연령 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투자 기간 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보유자산 등 : (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)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위험에 대한 태도 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:	☐ 충족 ☐ 미충족	() 점	
총 합	☐ 적정 ☐ 부적정	총점()점	